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2016.11.7.)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2016-65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16-66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2016-70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7
2016-71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6-7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3
2016-74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15
2016-75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7
206-78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20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10.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10. 26.

2.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공포(‘16.1.19 공포, 9.1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 및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법명 변경함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나. 위원 구성 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확인하여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된 법령위반사항을 바로 잡음(안 제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구성

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재기재·확인하는 조항 삭제(정비)함

- 위원회 기능(법 제25조), 구성(시행령 제74조), 위원의 해촉(시행령 제73조)

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제8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의 소집 및 정족수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 간사, 실비보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이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공포('16.1.19 공포, '16.9.1 시행)됨에 따라

나.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 또는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10.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10. 26.

2. 제정이유

-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거창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법인격을 정함(안 제2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다.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운영재원을 정함(안 제4조)

-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마. 수익사업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바.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음

사. 검사·보고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조례안은 거창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나.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규정에 근거 되어 있으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10.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10. 26.

2. 제안이유

- 가.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교통망 등 인프라가 미비하고 기술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으로 기업유치가 곤란하므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 나.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 승강기관련 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거창군의 소재하는 기업이 승강기전문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
- 나. 지원계획
 - 입지보조금

지 원 조 건		지 원 방 안	비고
①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10명 이상	경남도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입지보조금 50%+추가 20% 지원 (※ 도비 40%, 군비 30%)	
	경남도내	70%지원(군비)	
②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상시고용 10명 이상	경남도 내·외	50%지원(군비)	

- 기타보조금 : 경상남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방안과 동일

다. 소요예산

○ 투자기업 지원(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도 비	군 비	비 고
계	138.09	72.74	65.35	
입지 보조금	104.09	45.54	58.55	
시설 보조금	8.00	6.40	1.60	
고용 보조금	12.00	9.60	2.40	
교육훈련 보조금	12.00	9.60	2.40	
이전 보조금	2.00	1.60	0.40	

○ 군비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계	65.35	3.58	31.7	30.07	
입지 보조금	58.55	3.58	28.3	26.67	
시설 보조금	1.60		0.8	0.80	
고용 보조금	2.40		1.2	1.20	
교육훈련 보조금	2.40		1.2	1.20	
이전 보조금	0.40		0.2	0.20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는 현재 조성 중(진도율 95%)에 있으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제2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의 규정을 근거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16.6.20)하였으며,
- 나. 우리군은 대도시 보다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관련 기술인력이 부족한 지역이라 기업유치 등에 애로사항이 있음

- 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입지지원), 같은 조례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및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의 규정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 라. 금번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은 대도시 보다 인프라 구축이 불리한 우리군의 기업유치에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10.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10. 26.

2. 제안이유

-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 명: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위치: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시설개요

구분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14. 3. 22.		2014. 6. 12.	
규모/부지	지상2층/774,38㎡		46,426㎡	
근무인원	5명		1명	
주요시설	1층	우주체험관, 4D영상관	캐빈하우스	복층 4동
	2층	우주창의관, 교육체험실	방갈로	단층 3동
	옥상	천체관측관	야영데크	14동
부대시설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물탱크, 야외공연장, 전기발전 시설 등	

나. 청소년이용시설 운영 현황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최초위탁 : 2014. 3. 3. ~ 2016. 12. 31.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최초위탁 : 2014. 6. 12. ~ 2016. 12. 31.

다. 위탁사무 및 조건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 무상사용
 -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 관람료 등 입장료 거창군 수입 처리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연4회(연8,780천원) 거창군에 납부
 - ※ 입찰가격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위탁기간 : 2017. 1. 1. ~ 2020. 12. 31.일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마. 수탁자격 : 경상남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바. 예산지원 : 시설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및 국민여가캠핑장은 관람객 및 이용객 증가와 수입액 증가 등 지속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 나. 인근 월성청소년수련원과의 업무 연계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 다. 운영에 따른 수익도 있고,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위탁관리가 더 효율적이라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10.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10. 26.

2. 제안이유

- 2017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나. 대 상: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허동훈)
- 다. 사 업 비: 3,2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3,085	3,200	3,200			3,200	

- 라. 사업내용: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과제 선정, 연구 수행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전 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거창군 3,200천원)를 출연하는 것으로
- 나. 금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10.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10. 26.

2. 제안이유

- 가. 문화재단 설립으로 군민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 나.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에 대한 예술적 안목과 문화경영 능력을 겸비한 전문 문화조직 구성으로 지역문화 역량을 결집시키고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자 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나. 대 상: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사장 양동인)
- 다. 사 업 비: 5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	50,000	50,000	-	-	50,000	-

- 라. 사업내용: 거창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조성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거창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의 규정에 따라 설립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의 규정에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 다. 금번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재 단 법 인 거 창 군 장 학 회 출 연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10.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10. 26.

2. 제안이유

-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나. 대 상: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대표 양동인)
- 다. 사 업 비: 5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 라. 사업내용: 장학사업 등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 다. 따라서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였던 교육환경 개선 보조사업이 교육기관으로 지원될 수 없음으로 인해 장학회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출연함
- 라. 거창군 장학회운영 세칙에 의거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인재집중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출연금 뿐 아니라 자체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 활동 등을 통하여 장학회사업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방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마. 금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0.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10. 2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10. 26.

2. 제안이유

- 가.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 거창 홍보
- 나.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판매·홍보 및 숙박·요식업소 특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유치계획

연도별	대 회 명	대회개최(예정)	참가규모	사업비(백만원)
2017년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2017.1월중 (6일간)	2,700명	105 (군100, 자부담 5)

나. 대회개요

대 회 명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주 최	한국초등배구연맹
주 관	경남배구협회/거창군배구협회
후 원	거창군
일 정	2017. 1월중(6일간)
참 가 팀	45개팀
참가인원	2,700명(선수 800, 임원 200, 지도자180, 학부모,교직원 등 1,520)
예 산	105백만원(군비 100, 자부담 5)
예산내용	대회준비비, 참가팀보조비, 대회운영비(코트설치철거, 시상, 인쇄, 홍보, 심판, 심판, 숙박비 등)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연령이 어린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유치를 통하여 가족동반 또는 가족이 그룹으로 지역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며
- 나.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우리군 체육인재 양성과 저변확대 기여 및 스포츠메카로서의 거창 홍보효과가 있어
- 다. 금번 2017년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대회유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